

발 행 인 : 관 악 구 청 장
 편 집 인 : 홍보전산과장
 전 화 : 879-5255

관악구보

제1727호 2017. 9. 12.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● 제2017-1247호 :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

공 람											



관 악 구

공 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-1247호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3호(2006.01.12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관악구고시 제2006-84호(2006.12.05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35호(2012.09.06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관악구고시 제2013-39호(2013.05.16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5호(2017.05.25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.

2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관악구청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9월 12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7.09.12. ~ 2017.09.26.

나. 공람장소

○ 관악구청 주택과 (☎879-6321)

○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853-8885)

다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 요지

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

○ 면 적 : 24,558.1㎡ [공동주택지 24,035.7㎡, 정비기반시설(도로)522.4㎡]

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자 조합장 정명희)

-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25, 15동 27호(신림동, 강남아파트)

○ 서울주택도시공사 (대표자 사장 변창흠)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(개포동)

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○ 건폐율 25.28%, 용적률 405.40%, 높이 101.75m, 연면적 146,501.48㎡

○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7개동 1,143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○ 주택의 규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

6) 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
라. 의견제출방법 : 공람의견서(공람장소에 비치) 작성 후 관악구청 주택과 방문, 우편 발송(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,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) 또는 fax(879-7831) 제출



행복한 세상! 정령 관악이 함께합니다!

부 조 리
신고안내

관악구 감사담당관
> 공직자부조리신고 : 02-879-5111
> 하도급부조리신고 : 02-879-5107

